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3. 5.27(월)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13. 6. 21(금)

다. 상정일자 : 2013. 6. 21(금)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자치행정과장)

-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변경통보 및 상수도 관리업무 환경공단 위탁,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관리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고자 함.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정원변경은 현재 583명에서 591명으로 8명이 증가하게 되겠으며 증가는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변경에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전체적인 원인은 상수도 관리업무 환경공단위탁(감8명)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4명), 사회복지사 증원, 민물고기 생태관 민간위탁에 따른 조정(감2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 조례개정으로 인해 증원(8명)되는 분야는 국제교류업무(기획 감사실), 사회복지분야(주민생활지원과),기업투자유치(경제체육과) 환경올림픽사업 및 위생업무(환경과), 동계올림픽(동계올림픽 추진단),올림픽 접근도로 보상인력(건설방재과)이 되겠습니다
- 본 증원은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변경에 따른 증원이라고 하겠으나 출산휴가, 유아휴직 등 총원 등 인력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1년에 무려 8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한 것은 이례적으로 조직부서의 인력충원 의지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83명”을 “59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71명”을 “579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91	59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491	491				
4급	2	1		1		
4~5급	2	2				
5급	25	10	2	4	1	8
6급 이하	462	462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19	19				
지도관	1			1		
지도사	18	18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기능직 계	77	77				
기능6급 이하	77	77				

